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02

발의연월일: 2021. 9. 10.

발 의 자:고민정·강준현·고영인

김민석 · 김승남 · 김승수

김영주 · 김정호 · 도종환

류호정 • 민병덕 • 박주민

신현영 · 안규백 · 오영환

우워식 • 윤미향 • 윤준병

이규민 • 이성만 • 이형석

장경태 · 정일영 · 조오섭

진선미 • 천준호 • 최강욱

최혜영·허 영·허종식

홍영표 · 홍익표 의원

(329]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, 어린이집의 원장, 유치원의 원장 및 초·중·고등학교의 장 등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학대상황에 대한 판단, 의사표현 및 신고가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, 어린이집 보육교직원,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,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).

법률 제 호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및 아동학대 예방"을 "예방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때 그 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하여야 한다.

1의2. 아동학대 예방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	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
① 아동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	①
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	
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	
유치원의 원장 및 「초·중등교	
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	
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	
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	
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	
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<후	<u>이 때</u>
<u>단 신설&gt;</u>	그 대상이 영유아인 경우 아동
	복지시설의 장, 「영유아보육
	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
	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
	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
	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
	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
	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하여야
	<u>한다.</u>
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	1 <u>예방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1의2. 아동학대 예방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